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03

2020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노승재 의원(찬성자 10명)

나. 발의일자 : 2020년 4월 2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4월 8일

라. 상정결과 :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년 4월 23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노승재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안 제2조)

(2).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3).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본계획 등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 안 제6조)

(4).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7조 ~ 안 제8조)

(5).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9조 ~ 안 제12조)

(6).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와 교육시설 및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3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2)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3)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가. 제정안 개요

○ 동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에 대해 규정하며,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근거와 생활권 내 '문화예술교육센터'의 인프라 확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및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고자 함.

나. 제정의 필요성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었고,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국민 문화예술역량강화’가 세부과제로 강조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국민은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 실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1]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중요성 및 수요가 증대하고 있고,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으며,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고,

그 동안의 문화예술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문화향유의 저변이 확대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공급자 · 중앙 주도적 정책의 한계,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미흡, 전 국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필요성 등이 한계 또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현재의 수직적 전달체계를 지역 자율성을 고려한 협력체계로의 전환, 생애주기 · 사회적 · 지역적 여건 등에 따른 수요를 고려한 정책설계 등이 향후의 문화예술교육 정책방향에서 주목되고 있는 바,

---

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육성기반 체계화를 위해 서울을 포함, 시도별로 문화예술교육이 수립되고 있고, 이미 6개 광역단체(경기, 부산, 전남, 제주, 충북, 광주)에서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가 제정된 바 있으므로(참고1), 서울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의 추진 근거로 독립적인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1) 조례안의 구조

○ 동 제정안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 등 총 14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조문체계 현황>

조	조제목	조	조제목
제1조	목적	제8조	협의회 구성 등
제2조	정의	제9조	협의회 운영 등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등
제4조	기본원칙	제11조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제5조	시장의 책무	제12조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제6조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등	제13조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
제7조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등	제14조	시행규칙

(2) 조례안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안 제4조는 문화예술교육이 모든 시민의 문화 참여 및 예술 창작의 권리 보장을 통해 문화다양성과 예술의 주체적 생산 · 향유권의 증진,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며,

모든 시민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점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천명으로 하고 있음.

○ '2018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서울시문화재단)'에서 "평생동안 한 번이라도 문화예술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55.9%가 "없다"라고 답했고, 특히 연령대별로는 40대(60.9%), 50대(67.4%)에서 높고, 지역별로는 동남권(48%)에 비해 서북권(72.4%)에서 높게 나타난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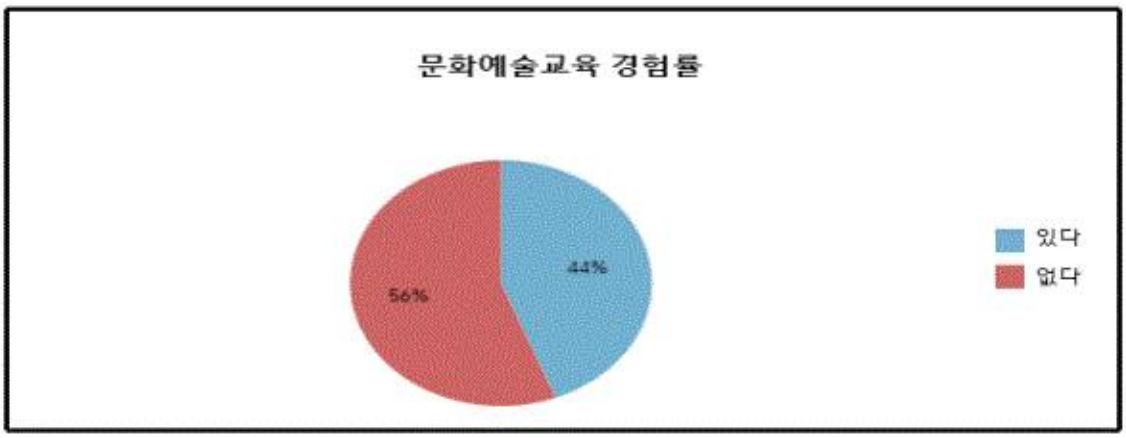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거주지역에 따라 문화예술 향유 기회에 차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18 문화향수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근래 학교교육 외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림 2-19> 1년 이내 학교교육 외 문화예술교육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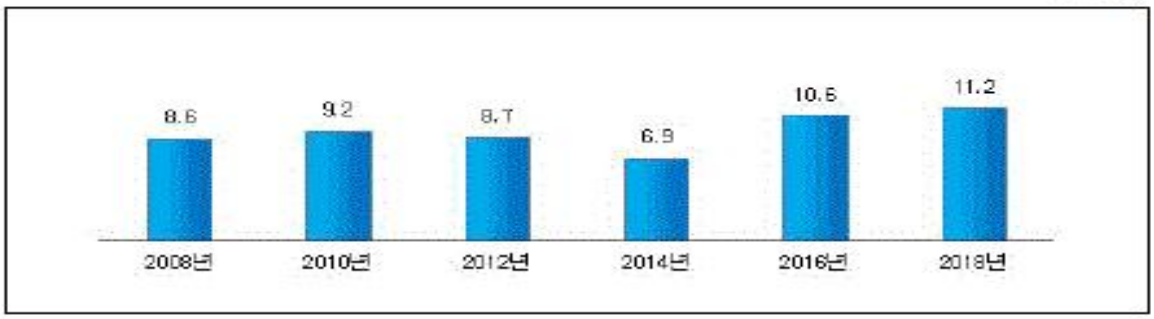

향후 1년 이내 학교교육 외 문화예술교육 참여 의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문화예술교육 비경험자의 참여 의향(19.0%)과 경험자의 참여 의향(90.2%) 사이에 나타나는 큰 차이로부터 문화예술교육의 긍정적 효과를 알 수 있으므로, 시민의 보편적인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림 2-25> 향후 1년 이내 문화예술교육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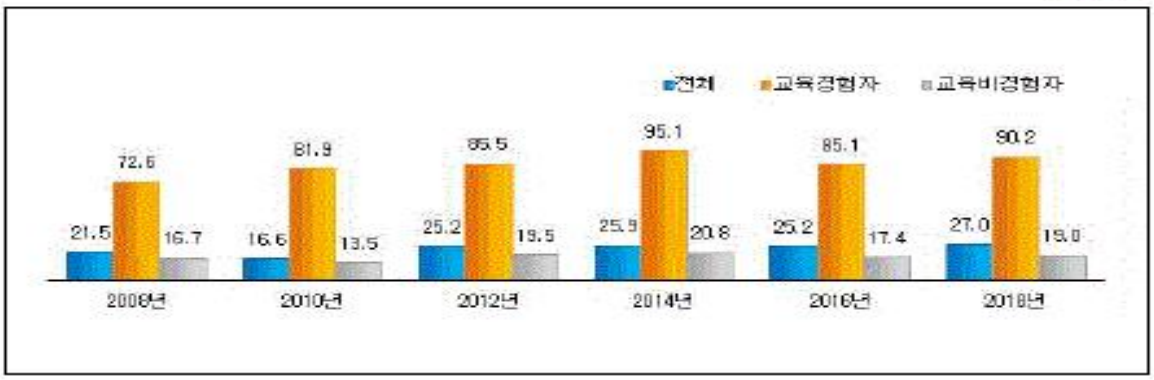

(3)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①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과 ②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③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제2항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이하 "문체부 계획"이라 한다)에서 문화예술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으로 중앙-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및 협력체계가 미비하여 생활권(기초) 단위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밀착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현 학교와 사회로 이원화된 문화예술교육 정책구조를 지역 내 학교-사회를 연계한 통합적 접근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지역 내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분권 및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시민이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회를 쉽게 접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이 지역사회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시민의 수요에 부합되도록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역을 매개로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이분화 구조를 극복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교육청 외 문화예술교육과 다른 교육지원제도(평생학습, 생활문화, 혁신교육지구, 마을공동체사업 등) 사이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중앙정부 주도로 운영되어온 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임.

○ 안 제5조제3항과 관련하여 실제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수혜율은 전체대비 1% 내외에 불과[2]하나 막연히 특정세대를 위한 교육 사업을 만들고 탑-다운 식으로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지역별 편차와 기회제공의 구조적 환경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지역관점'에서의 구조적 편차를 고려해야 하며, 더 나아가 난민, 다문화가족, 북한 이탈주민 등 다양한 시민들에게도 균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안 제6조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문체부 계획을 토대로 서울시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2018~2020), 2018.12.'을 수립하였음.

○ 우리 사회는 문화예술교육정책이 구상되던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여 매우 급속하게 변화를 겪고 있으며, 노인인구와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불안, 개인주의 확산 등 삶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문화다양성은 가속화될 전망임.

또한 경제적 불평등은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일으키며, 과학기술의 발달은 산업 · 직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화 대체 확률이 낮은 30개 직업 중 절반이 문화예술관련 직종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은 강조될 것이므로 시장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영역의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고, 탈 장르 주제교육, 융합교육 등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여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

2) 서울연구원,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분석 및 개선방향」, 2017, p.309~310

(5)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관한 규정(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

○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근거로 규정되었고,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 등을 하고자 지역문화예술교육협의회를 두게 하고 있음.

다만, 제시된 운영방식이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 부위원장은 시교육감이 지명하는 시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여 연 2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지역문화예술교육 협의를 위해 실무를 지원할 위원회의 설치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서울문화예술교육협의회('18. 4월 구성, 총 11명)와 지역 내 공공민간영역 문화예술교육 주체들이 모여 상호간에 실행력을 가지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별 추진체계를 보완적으로 구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체부 계획 내 추진과제 중 시도별 지역문화예술교육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학교+사회+문화 영역의 실무협의회 구성'을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고,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임(2019.4.23. 정세균 의원 외 23명 발의).

(6)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등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서울시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서울문화재단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문화재단과 관련하여 협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연구원[3]은 중앙정부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 관리하여 서울시의 상황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사업을 대행하는 기능을 더 크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지역사회 기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의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가 지역분권형 추진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점차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이 중시되는 체계에서 지역센터의 사업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업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임(2019.4.23. 정세균 의원 외 23명 발의).

---

3) 서울연구원, 「2017 서울시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 차원에서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4대 개선방안 수립」, 2017, p26.

○ 문화예술교육 전문 웹진 아르떼365[4]에 따르면 지역사회 기반인 기초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초센터 지정 혹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나 이는 철저히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형성 및 구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져야 하며,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를 비롯해 평생학습센터, 사회복지기관, 사회적 경제단체 등 지역 내 다양한 논의 주체들이 협치할 수 있도록 수평적으로 협력하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하나 '기초센터=기초문화재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음.

(7) 학교와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1조에서 안 제12조까지)

○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장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과 제4장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근거로 규정된 것임.

○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상생활과 유리된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제도, 지역연계 예술교육활성화 사업 등 지역연계형 문화예술교육체계를 위해 노력하나 여전히 이원화되어 지역의 특성과 현장의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임.

○ 서울연구원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집중식 행정체계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한 지역분권형 행정체계로의 전환과 지역기관 및 단체들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및 파트너십 체계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자치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5]하였음.

---

4) 문화예술교육 전문 웹진 아르떼365, 「도전과 과제는 현재진행형」,2019.12.23.(http://arte365.kr/?p=77235)
5) 서울연구원, 「2017 서울시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 차원에서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4대 개선방안 수립」, 2017, p15.

○ 서울시 문화본부와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2020년 사회문화예술교육관련 예산을 살펴보면(참고3), (ⅰ) 사회소외 관련 사업(11%), (ⅱ) 사회일반 관련 사업(12%), (ⅲ) 기반구축 · 공간운영 관련 사업(56%), (ⅳ) 학교일반 관련 사업(20%)임을 알 수 있는데,

저소득층과 장애 청소년 등 사회소외 분야 사업의 예산이 문화예술교육 예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서서울교육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아동 · 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등 기반구축 · 공간운영을 위한 예산 비중이 높게 편성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서울시 아동 · 청소년 문화예술센터' 15개소 건립과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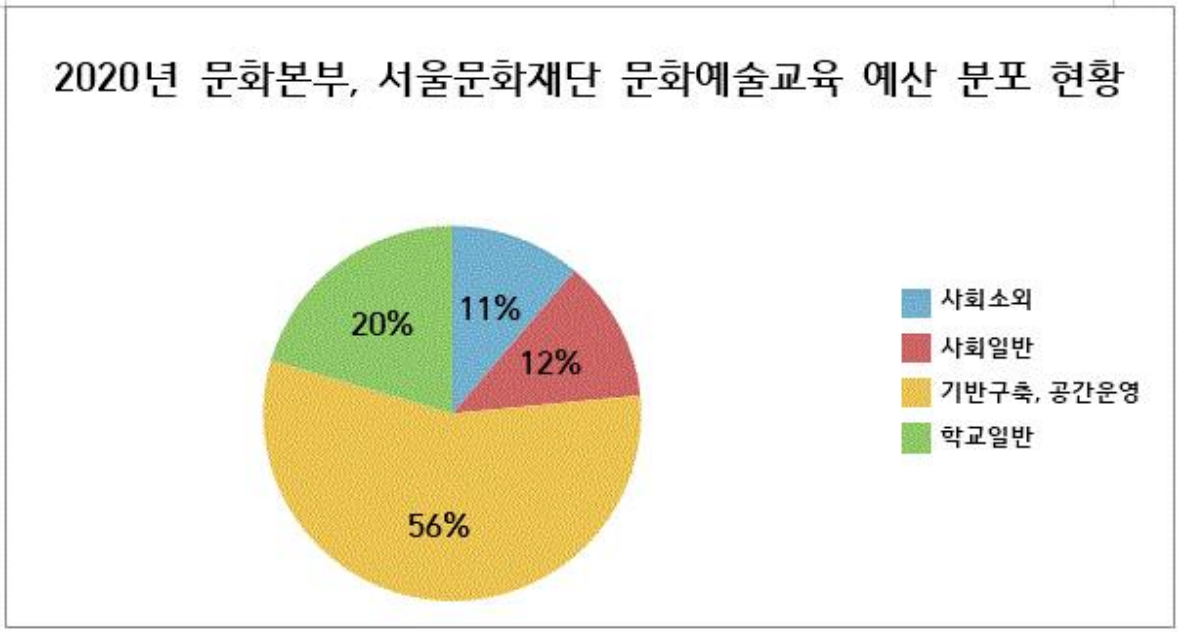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사업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이분화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점차 융 · 복합하여 지역 내 학교-복지시설-평생교육기관-문화시설 등을 잇는 통합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교육공간과 자원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로 수행되고 있던 문화예술교육들은 지역사회 중심 교육으로 변화시키며, 지역예술가, 교사,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등이 협업하여 그 지역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발전시켜야 할 것임.

(8)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 안 제13조는 시장방침[6]과 서울시 발표[7]를 근거로 건립되고 있는 권역별 지역밀착형 「아동 · 청소년 예술교육센터」가 동 제정안을 통해 조성 및 확충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규정한 것임.

○ 서울시는 현재 아동 ·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체험기회 제공 등 다양한 예술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여 아동 · 청소년의 창의성 및 감성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아동 · 청소년 예술교육센터 15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며(참고4), 이 중 3개는 이미 개관하여 운영중임.

〈서울시 아동 · 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권역별 추진사항〉

권역	연번	추진주체	사업위치	규모	진행사항
도심권	1	교육청	(성동구) 제2창의예술교육센터	2,650㎡	개관('18.4.) 및 운영중
	2	기부채납	(용산구) 용산4구역 정비사업	4,085㎡	공사중(인테리어 설계중) (20. 10월 개관예정)
서남권	3	서울시	(양천구) 서서울예술교육센터	1,190㎡	개관('16.10.) 및 운영중
	4	기부채납	(금천구) 시흥 무지개아파트 재건축	1,944㎡	사업시행인가 (24년 이후 개관예정)

6) 권역별 지역예술교육센터 10개소 건립(시장방침 제103호, 2014년 4월)
7) 서울시, 강북 우선투자 전략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구상 발표(2018년 8월)

권역	연번	추진주체	사업위치	규모	진행사항
서북권	5	교육청	(은평구) 창의예술교육센터	3,349㎡	개관('14.7.) 및 운영중
	6	기부채납	(은평구) 수색13구역 재정비	3,051㎡	착공 전(거주민 이주완료) (22년 개관예정)
동남권	7	기부채납	(서초구) 신반포3차 재건축	7,100㎡	착공 전(거주민 이주완료) (23년 개관예정)
	8	기부채납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	미정	추진위원회 승인 (공원으로 변경되어 대체 시설 발굴필요)
동북권	9	서울시	(강북구) 동북권 예술교육센터	4,725㎡	공사중(22.10월 개관예정)
	10	기부채납	(도봉구) 성대야구장부지 개발사업	2,860㎡	도시계획변경 준비 (24년 이후 개관예정)

○ '아동 · 청소년예술교육센터 건립'은 서울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정책적으로 태동된 사업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간 구체적인 제도적 지원기준 없이 자치구 요구에 대해 사안별로 검토 및 지원되어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아동 · 청소년예술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한 보편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서울시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실시[8]하였음.

○ 연구결과에 따르면, 권역별 예술교육센터는 아동 · 청소년 · 성인 등 전 연령층의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지역자원(학교, 문화시설, 예술단체, 강사 등)들과의 협력적 연계체계를 우선으로 하며, 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컨트롤 타워로서 권역별 문화예술센터 정보제공 및 교류의 공간으로 운영자, 이용자, 지역자원 간의 정보제공 체계와 같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8)「지역별 아동 · 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조성 · 확충 및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재)한국기업평가원, 2018.5.25.~2019.2.24.

○ 문화예술교육 전문 웹진 아르떼365[9]에서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는 그간 난립했던 지역 문화센터와 공연장처럼 소프트웨어 없이 하드웨어만 있어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으므로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민, 문화예술교육가, 예술가, 시설 운영사업자 등이 주체가 되고 참여하여 공간이 건립되도록 해야 할 것임.

9) 문화예술교육 전문 웹진 아르떼365, 「도전과 과제는 현재진행형」,2019.12.23.(http://arte365.kr/?p=77235)

라. 종합 의견

○ 동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내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및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음.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국민 문화예술역량 강화’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 실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있고, 문체부 계획에 따라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육성기반 체계화를 위해 시도별 문화예술교육이 수립되고 있으므로 서울형 문화예술교육의 추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문체부 계획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분권화로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규정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으며,

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축제지원 조례’와 같이 폐기되었다가 다시 별도의 조례로 제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른 문화관련 조례와 정책 영역이 중첩되지 않는 구체적이고 면밀한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참고1,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시·도명	조례명	제정일
1	부산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16.8.3.
2	대구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2019.8.12.
3	광주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2017.11.15.
4	경기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09.12.31.
5	강원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18.12.28.
6	충북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13.5.10.
7	충남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19.2.20.
8	전북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9.6.7.
9	전남	전라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6.7.7.
10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19.7.19.
1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11.6.29.
12	경북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17.12.28.
13	경남	경상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19.8.1.

〈참고2.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

응답자 특성분석

- '있다' 응답이 높은 계층은 동남권(52.0%), 학생(52.1%), 800만원 이상(63.2%) 등으로 나타났으며, '없다' 응답은 50대(67.4%), 서북권(72.4%), 전문대(77.0%) 등에서 높게 나타남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456**	**44.1**	**55.9**
성별	남성	211	38.4	61.6
	여성	245	49.0	51.0
연령	29세 이하	131	50.6	49.4
	30대	81	44.5	55.5
	40대	71	39.1	60.9
	50대	51	32.6	67.4
	60세 이상	122	44.7	55.3
권역	도심권	21	32.8	67.2
	동북권	156	45.8	54.2
	서북권	58	27.6	72.4
	서남권	103	44.3	55.7
	동남권	118	52.0	48.0
결혼 여부	기혼	266	42.8	57.2
	미혼	190	46.0	54.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68	38.5	61.5
	자녀 없음	98	50.0	5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97	46.2	53.8
	전문대	50	23.0	77.0
	대학교	203	47.0	53.0
	대학원 이상	5	57.0	43.0
직업	문화예술 관련	3	90.9	9.1
	전문/관리직	35	50.1	49.9
	사무직	120	47.0	53.0
	판매/서비스직	36	40.9	59.1
	학생	88	52.1	47.9
	주부	69	36.4	63.6
	무직	53	37.5	62.5
	기타	52	36.8	63.2
월 소득	200만원 미만	86	41.6	58.4
	200-300만원 미만	62	36.6	63.4
	300-400만원 미만	66	43.7	56.3
	400-500만원 미만	74	38.3	61.7
	500-600만원 미만	71	35.4	64.6
	600-700만원 미만	27	51.8	48.2
	700-800만원 미만	22	73.3	26.7
	800만원 이상	48	63.2	36.8

〈참고3. 2020년 문화본부,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분야 및 사업명	예산	소관
합계		**17,830**	
사회소외		**1,712**	
1	저소득층 예술영재교육 지원	800	문화본부
2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음악교실운영	200	문화본부
3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150	문화본부
4	우리동네예술학교	562	세종문화회관
사회일반		**3,367**	
5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	2,167	문화재단(위수탁)
6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600	문화재단(위수탁)
7	서울시민예술대학	400	문화재단(고유)
8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	200	문화본부
기반구축·공간운영		**9,590**	
9	서울 예술교육 아카데미 및 가치확산	320	문화재단(고유)
10	서서울교육센터	1,000	문화재단(고유)
11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305	문화재단(고유)
12	용산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	1,800	문화재단(고유)
13	서울예술치유허브	540	문화재단(고유)
14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	2,167	문화본부
15	문화예술사 인턴십지원	210	문화본부
16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지원	575	문화본부
17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2,673	문화본부
학교일반		**3,161**	
18	서울형 예술학교_학교예술교육TA	2,380	문화재단(고유)
19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781	문화본부

〈참고4. 지역밀착형 「아동 · 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조성계획〉

지역밀착형「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조성계획

상대적으로 예술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비강남권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를 조성함으로써 강남북간 문화적 기회불평등 해소

1 추 진 개 요

□ 사업 필요성

○ 아동·청소년의 예술적 놀 권리를 실현시킬 전용공간 부족

- 동북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16년, 서울시)에 의하면 예술교육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술교육 시설 부재

▸ **시설이 별로 없어서(62%)** 〉 제공프로그램 부족(16.8%) 〉 교통 및 접근성 불편(9.5%) 순

○ 공공 예술교육시설 건립 및 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예술교육 향유기회 확대 필요

- 시민이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공공기관 부설기관 프로그램' 수강 (문체부, 2016 문화향수 실태조사)

▸ **공공기관 부설기관(39.4%)** 〉 사설학원 강습소(12.6%) 〉 사설단체 부설 문화센터(11.4%) 순

<표 설명>
: 문화예술교육 수요는 '공공기관 부설기관 프로그램'을 통한 실현기대가 가장 높음
→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자료출처>
: 문체부『2016 문화향수 실태조사』

□ 추진근거

○ 권역별 지역예술교육센터 10개소 건립(시장방침 제103호, '14.4.)

- 아동·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문화적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로 지역예술교육센터 10개소 건립 추진

○ **서울시, 강북 우선투자 전략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구상 발표('18.8.)**

-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비강남 지역을 대상으로 중소규모의 '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 5개소 추가 건립

☐ 지역밀착형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조성방안 마련

〔 기 존 〕		〔 개 선 〕
- 5대 권역별 2개소씩 균등하게 총 10개소 조성	➡	-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건립과 병행하여 상대적으로 **예술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비강남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 추가 건립**
※ 대규모 조성(5년 이상 소요), 신축(100억이상), 기부채납 위주		※ 중소규모 조성 (1~2년 소요), 자치구 소유 유휴시설 리모델링(15~20억)

추진내용		1단계 (2017-2020)	2단계 (2021-2025)	3단계 (2026-2030)	비 고
조성 목표	기존 (권역별)	3개소	4개소	3개소	비강남 지역 위주로 확산
	확산 (밀착형)	**2개소**	**3개소**	**0개소**	
	합계	5개소	7개소	3개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노승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3

발의년월일 : 2020년 4월 2일
발 의 자 : 노승재, 김춘례, 김인호, 경만선, 박기재, 오한아, 안광석, 문병훈, 김기덕, 김광수 의원(10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안 제2조)

나.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본계획 등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6조)

라.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7조～제9조)

마.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

바. 문화예술교육센터의 인프라 확충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시민의 문화 참여 및 예술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다양성과 예술의 주체적 생산·향유권의 증진,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② 모든 시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 등 문화예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기본계획 수립
2. 시 및 시교육청의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시교육감이 지

명하는 시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문화예술교육사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하는 사람,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교육 담당 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다.

제9조(협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등) 시장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① 시장은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축제·학예회·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공연·전시·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① 시장은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권역별로 균형있게 문화예술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를 조성 및 확충할 수 있다.

② 교육센터는 시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교육센터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7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등), 제10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등), 제11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제12조(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제13조(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에 의해 비용이 발생하나

○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제7조) 외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기 추진 중에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동 조례안 관련 서울시에서 기 추진 중인 사업내용〉

조례(안)	기 추진 중인 서울시 사업내용	예산(천원)
제10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등)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926,000
제11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5,978,000
제12조(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	800,000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721,000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운영	520,000
	○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00,000
제13조(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	○ 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 조성	1,500,000
합계		10,645,000

※ 첨부 1. 2020년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추진계획 1부
첨부 2. 2020년 지역밀착형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조성계획 1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총 비용 ≒ 30,600천원(연평균 6,12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내용 및 조항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세입	소계(a)	-	-	-	-	-	-
세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제7조)	6,120	6,120	6,120	6,120	6,120	30,600
	소계(b)	6,120	6,120	6,120	6,120	6,120	30,600
총 비용(b-a)		6,120	6,120	6,120	6,120	6,120	30,600

다. 비용추계 전제

-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는 11명(담당공무원 3명, 위촉위원 8명)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연4회(분기별 1회) 개최를 전제로 비용추계
- 물가상승률은 미반영

라. 비용추계 산식

○ 비용 추계 합계액 ≒ 총 30,600천원 (연 평균 6,120천원)

- 협의회 설치 및 운영 : 총 30,600천원 (연 평균 6,120천원)

· 연간 협의회 참석수당 : 150천원 × 8명 × 4회 = 4,800천원

· 연간 업무추진경비 : 30천원 × 11명 × 4회 = 1,320천원

※ 협의회 참석수당은 공무원 3명을 제외한 8명, 업무추진경비는 11명을 기준으로 추계

※ 회의참석 수당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기본료 10만원을 준용하고, 협의회가 2시간을 초과하여 진행된다고 가정하여 초과 비용 5만원을 포함

※ 업무추진비 단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별표1〕(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따라 3만원으로 가정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분석관(주무관) 박인근
☏ 02-2180-7934
e-mail : yab0217@seoul.go.kr